

해외동향분석

미국

미정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제도의 현황

李 長 載¹⁾

WTO가 출범되고 난 후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시행하고 있고 이들 제도들이 불공정 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국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발굴과 시행이 국가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업의 기술관련 지원제도의 현황-기술융자, 창업지원, 산업네트워크화사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기술융자제도

미국의 주 및 연방에서는 기술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업에게 모험자본 및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원제도들은 크게 기업융자와 프로젝트 융자 그리고 연방정부의 융자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종류의 융자 지원제도는 주정부의 경제개발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1) 기업융자

기업융자는 기술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금은 다양한 상업화와 관련된 수요-시장평가, 추가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융자의 형태는 주로 주정부가 협력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의 경우는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기업융자는 보조금, 저금리의 대출(이러한 경우 반제 일정, 최저 보증금, 추가 융자, 로얄티에 의한 반제방법 등의 조건을 사전에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州정부가 제3자인 은행, 벤처캐피탈, 기업투자개발회사와 같은 조직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주정부가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에 제 3자와 협력 출자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그 제 3자가 자신들의 독자적인 투자 계획에 따라 자금을 할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세액면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업융자는 사업계획의 유효성을 기초로 제공된다. 여기서는 기업연구의 기술적 이점과 상품으로서 성공할 전망이 고려되지만, 어떻게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는가가 보다 중요시된다. 나아가 상품의 개발, 제조 등의 활동이 州의 경제를 운택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주정부는 주의 범위내에서 제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약할 수 있다.

기업융자는 규모(금액), 융자기간 모두 실로 다양하다. 투자는 보조금, 대출, 주식투자 등의 형태를 취하여, \$50,000이하부터 수백 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프로젝트 융자

기업용자와는 반대로 프로젝트 용자는 특정한 연구 또는 개발프로젝트에 대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러한 용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용자는 주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프로젝트 용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연방 프로그램은 복수의 부처가 하고 있는 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이다. 1982년에 출범된 본 프로그램은 원래 용자 프로그램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나 현재 SBIR은 소규모 하이테크 기업에게는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 SBIR은 어떤 수준을 상회하는 R&D예산을 가진 연방 부처가 그러한 R&D예산의 일부를 소기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출자하는 부처의 연구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 기업에게 모형자본을 상당히 제공하고 있다. 1998년도 까지 SBIR의 용자는 연간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주요 프로그램인 첨단기술프로그램(ATP)은 기술개발과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용자 양자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장래성 있는 프로젝트는 2단계의 심의를 거쳐 용자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지원받는 기업은 기업의 기술 및 재무계획을 평가받게 되기 때문이다.

연방의 프로젝트 용자금액 및 기간은 프로그램마다 다르다. SBIR은 제 1단계로 \$50,000에서 \$100,000, 6개월에서 12개월간의 범위내에서 계획에 대하여 용자를 하고, 심의 후 제2단계에서 용자가 인정된 경우는 \$400,000에서 \$750,000, 최장 24개월간의 프로젝트 실행에 대하여 용자를 한다. 한 기업이 \$500,000에서 \$200만 까지, 기간은 최장 3년이다. 협력 투자의 경우에는 용자 한도액은 없지만,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정해져 있다. 인정되는 용자는 \$500,000에서 최고 2,000만 달러로, 1개사가 받을 수 있는 용자액은 2년에 걸쳐 100만 달러인 것이 통례이다.

주정부의 경우는 특정 업무 혹은 프로젝트에 용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정부에서는 기술·경영 양면의 심사를 한다. 프로젝트 용자에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기술심사를 중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 차원의 심사에서는 프로젝트의 질을 기술적인 면과 상업면에서 평가할 때 외부 심사위원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SBIR 프로그램의 심사에 참가하는 것은 주로 내부직원이지만 위탁 심사위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3) 연방정부의 용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정부의 제도

이 프로그램은 기술관련 기업이 연방의 용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SBIR의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30개의 주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직접 또는 독립된 조직을 통하여 주정부가 기회의 여부와 용자신청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공략방법을 검토하고 SBIR의 용자가 끊어진 후에 계속해서 용자받을 수 있는 민간의 용자처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몇 군데의 주에서는 SBIR 용자의 제1단계와 제2단계 사이의 갭을 메우는 용자를 하고 있다. SBIR의 용자에서는 제1단계가 종료하고, 제2단계의 용자가 인가되기까지 대체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주정부는 관련 상품의 시장관련성을 확대시키고 연방심사원의 눈에 들도록 프로젝트안의 경쟁성을 높여 프로젝트팀을 이 기간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창업 지원제도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의 기술혁신과 고용의 원천을 위한 정책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기업이 지역 또는 업

계내에서 다각화나 규모확대 또는 새로운 기술을 상업화할 때 지원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1) 인큐베이터제도

인큐베이터제도는 1980년대에 창업기업 지원에서 가장 주목된 지원제도였다. 국립사업 인큐베이터협회에 따르면, 북미에는 약 500개의 인큐베이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설의 공용이나 저가격으로 사무실·연구실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업서비스이다. 사무실·연구소 등의 공간이나 서비스는 소규모기업의 초기 단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제공된다. 대부분의 협력기술 인큐베이터는 대학이나 그 밖의 기술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연방연구소나 기업의 기술혁신센터 등과 제휴하고 있으며, 인큐베이터전용빌딩도 있다.

(2) 연방 창업지원

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연방의 창업지원은 한정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에 인큐베이터와 연방부처 그리고 연방연구소 3자를 연계하고 있다. 연방기술을 라이선스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투자 가이드라인은 창업기업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는 창업지원 활동을 거의 하지않고 있어, 주정부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3) 연구단지

연구단지는 창업지원 이외의 지원방법으로 분류되는 협력기술 지원제도이다. 연구단지는 어떤 한 지역에서 기업에게 수요에 맞는 공간 혹은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단지에서 잠재력을 가진 기업과 대학의 능력이 결부되고 있으며, 대학이 가진 기술의 상업화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단지는 또한 대학으로부터의 확산 혹은 다른(대학과 동등한) 조직이 단지내에 입주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시사점

미국에서의 중소기업의 기술 관련 지원하는 제도의 중심은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기업용자와 프로젝트 유자 그리고 창업지원 등을 주정부는 지방기업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지원은 주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제도나 지원방식을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산업간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의 정보화도 기술관련 중소기업의 지원책으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주석 1) 총괄연구실 선임연구원, 「과학기술정책동향」 지 편집인(Tel: 02-250-3026)

